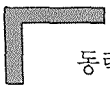


# '93 석유사업기금 징수운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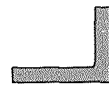
- 동력자원부 -



동력자원부는 국제원유가의 하락으로 국내도입가가 배럴당 18달러인 기준 유가를 하회할 경우 석유수입시 부과하는 석유사업기금 1.7\$/B 이외의 추가 기금징수요인을 정유업계에 대한 손실보전이 끝날때까지 징수를 유보, 상계 처리하고, 수입유보금액중 수입원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정유 5사의 연간 평균 수입금 단가에 맞추어 사후보정하기로 했다.

차액기금 유보금액의 산정방법을 보면 정유사별 월별 기금유보액(상계처리금액)은 월별 기금유보단가에 정유사별 기금징수 유보대상 물량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기금유보단가는 국내 기준유가와 평균도입가와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유가들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매달 산정 통보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금유보금액의 산정은 기금징수요인이 발생하는 지난해 12월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된다.



동력자원부고시(제93-11호)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비율등에 관한 고시 중 개정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의 징수비율 등에 관한 고시(동력자원부고시 제92-35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93. 2. 9

동력자원부장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음-

제3조(석유정제업자의 연간 수입금단가의 사후보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가 수입하여 석유정제업자가 인수한 원유에 대해 납부한 수입금의 순납부단가가 회계연도기간중 동일하도록 다음과 같이 사후 보정한다.

가. 석유정제업자 전체 및 석유정제업자별 연간 수입금 순납부 단가의 산정은 다음 방식에 의거하여 계산

$$\frac{\Sigma(\text{월별수입금단가} \times \text{월별원유통관량}) - \Sigma(\text{월별수입금환급단가} \times \text{월별환급대상량})}{\text{연간 원유통관량} - \text{연간 환급대상량}}$$

단, 환급대상량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3규

정에 의한 환급량중 국내에서 원유를 정제하여 판매, 사용한 것으로 함(이하 동일함).

나. 석유정제업자간 수입금 납부금액의 사후보정

- 당해 석유정제업자의 연간수입금 순납부 단가(A) < 석유정제업자전체의 연간수입금 순납부 단가(B) 일 경우
  - 당해 석유정제업자는,  $(B-A) \times$  당해 석유정제업자의(연간원유통관량-연간환급대상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석유사업기금에 지급
- 당해 석유정제업자의 연간수입금 순납부 단가(C) < 석유정제업자전체의 연간수입금 순납부 단가(B) 일 경우
  - 당해 석유정제업자는,  $(C-B) \times$  당해 석유정제업자의(연간원유통관량-연간환급대상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석유사업기금으로부터 수령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93. 1. 1 이후 원유통관분부터 적용한다.
2. (제1조 및 제3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제1조에 의해 징수하는 수입금 이외에 원유의 실도입 본선인도가격이 원유의 기준가격을 하회하여 추가로 징수하여야 할 수입금은 석유사업법 제17조의 4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보전이 완료될 때 까지 징수를 유보하며 동 징수유보금액 중 수입원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고시 제3조에 의한 연간 수입금 단가의 사후보정에 동일한 기준에 포함한다.

**석유사업기금 징수유보액 조치방안**  
(기준원유가와 실도입가와의 차액분)

가. 기본방향

'92.12월 이후 국내도입가가 유가반영 기준 유가를 하회하고 있으므로, 국내 수입석유에 대해 도입가와 기준유가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기금징수요인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정유사 미지급금과 상계조치 함.  
(유정 29201-225, '91. 3. 22 및 유정 29201-76, '92. 3. 7 참조)

\*정액기금(1.7\$/B)은 원유 및 제품도입시 우선 납부하

게 되나 차액기금은 사후에 정산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정산 절차가 필요

나. 차액기금 유보금액의 산정

(1) 정유사의 기금징수요인

정유사별 월별 기금유보액(상계처리금액)은 월별 기금유보단가에 정유사별 기금징수유보 대상 물량을 곱하여 산정

- 기금유보단가: 국내 기준유가와 평균도입가와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유가들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매월 산정 통보
- 기금징수 유보대상 석유량
  - ① 석유정제업자가 수입하는 석유통관량에서 수출등 환급 대상량을 차감한 물량으로 하되, 석유정제업자가 아닌 석유수입업자가 수입한 석유는 그 석유를 인수한 석유정제업자의 수입석유량에 포함
  - ②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화학업체, 노말파라핀 제조업체, 윤활기유 제조업체, 비료제조업체 등에 공급한 국내 생산석유중 환급대상량은 당해 석유를 공급한 석유정제업자의 기금징수유보 대상량에서 차감.

(2) 정유사 이외의 기금징수요인

석유수입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나프타부산 연료등 기금징수대상에 대해서는 부산물을 인수한 석유정제업자의 기금유보액으로 간주하여 석유정제업자로부터 환수  
→ 석유수입업자는 부산물관매시 석유정제업자가 부담할 기금액을 감안하여 판매

- 기금유보단가: (1) 항의 유보단가
- 석유화학 부산물을 인수하는 특정 정유회사에 대한 기금유보액
  - 현행 규정에 따른 석유수입업자의 기금유보액 ÷ 당해정유사 인수물량 ÷ 정유사의 전체인수물량
  - 당해월 정유사의 인수물량이 없는 경우 최초 인수월의 물량으로 처리

다. 시행시기

- '가' 항의 기금유보금액의 산정은 기금징수요인이 발생하는 '92.12월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함(실 징수는 하지 아니하고 정유사 미지급분을 상계조치하는 방법으로 징수)

라. 행정사항

- 동자부는 '92.12월 이후 기금유보단가를 석유개발공사, 정유사, 석유화학사(협회)에 통보
- 석유개발공사는 월별 기금유보대상량, 기금유보금액 및 미지급잔액을 동력자원부 및 관련업체에 보고(통보)

# '93 에너지 수급전망

- 동력자원부 -

- '93년의 1차에너지수요는 '92년 증가율 12.3% 보다 둔화된 9.2% 증가하여 석유환산 126,245천 TOE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93년도의 9.2% 증가율은 '90년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특히 석유화학시설 증설이 '92년에 완료되어 금년도에는 석유제품 원료용의 에너지 수요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990	1991	1992(잠정)	1993(전망)
-경제성장율	9.3	8.4	5.0	5.7~6.6
-1차에너지수요(천TOE)	93,192	103,622	115,620	126,245
(증가율, %)	(14.1)	(11.2)	(12.3)	(9.2)
-연료용	13.3	8.1	8.5	9.2
-원료용	19.0	27.7	29.2	9.1
(나프타)	39.2	38.1	48.9	7.4

- '89년 이후 상승세인 에너지지원단위도 '93년도에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석유·유연탄·LNG 등 수입에너지는 증가하는 반면,

국내생산 무연탄 수요는 크게 감소하여 에너지 수입의존도 및 석유비중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0	1991	1992(잠정)	1993(전망)
-에너지지원단위 (TOE/'85불변, 백만원)	0.71	0.73	0.78	0.80
(증가율, %)	(4.4)	(2.8)	(6.8)	(2.5)
-에너지수입의존도(%)	87.9	91.3	93.7	94.8
-석유비중(%)	53.8	57.5	61.7	63.2
-무연탄비중(%)	10.7	7.9	5.2	3.9

## 에너지원별 수요전망

- 석유수요는 '92년도에 석유화학시설 증설이 완료('93년은 추가증설이 없음)되어 원료용(특히 나프타) 수요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9.8%p 낮아진 1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 LNG는 대전, 청주등 중부권의 도시가스 신규공급 및 신도시 열병합발전 가동등으로 20.6% 증가하

여 전체에너지중 비중도 '92년 4.0%에서 금년도에는 4.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 무연탄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편의성있는 고급 에너지 선호경향과 다른연료에 대한 상대적 가격 경쟁력의 약화 및 환경규제영향등으로 전년대비 17.3% 감소하여 전체에너지중의 비중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 유연탄은 보령, 삼천포 화력발전설비 증설과 '92.10월 준공한 포철 광양4호기 본격 가동등으로

발전용, 제철용이 크게 늘어나 전년대비 1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 고급에너지인 전력 및 도시가스 수요도 전년대비 10.0%, 24.6% 각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원별 수요전망

	단 위	1992(잠정)			1993(전망)		
		물 량	증감율	구성비	물 량	증감율	구성비
석 유	천배럴	511,853	21.6	61.7	572,434	11.8	63.2
L N G	천 톤	3,525	30.8	4.0	4,250	20.6	4.4
무 연 탄	"	12,964	△24.6	5.2	10,721	△17.3	3.9
유 · 연 탄	"	27,164	9.4	15.5	31,256	15.1	16.3
원 자 력	GWH	56,192	△0.2	12.1	54,038	△3.8	10.7
수 력	"	4,710	△6.8	1.0	5,359	13.8	1.1
기 타	천 TOE	592	△4.0	0.5	578	△2.5	0.4
計	천 TOE	115,620	12.3	100.0	126,245	9.2	100.0
(전 력)	(GWH)	115,140	10.3	27.1	126,650	10.0	27.8
(도시가스)	백만m <sup>3</sup>	1,967	34.1	2.0	2,451	24.6	2.3

부문별 에너지수요전망

- 산업부문은 석유화학 공업원료인 나프타 수요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아스팔트, 경유, B-C유 등 산업용 에너지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율이 낮아져 전년도 18.1% 증가율 보다 크게 둔화된 8.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 수송부문은 차량증가율 둔화와 내수진정에 의한 생산활동 둔화로 수송물동량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도 2.2%p 둔화된 13.2% 증가가 예상되며,

- 가정 · 상업부문은 신도시 입주세대수 증가와 계속된 신규주택 증가영향으로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수입전망

- 국내 에너지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국내 생산에너지인 무연탄수요의 감소로 인한 원유, 석유제품 등 해외에너지 수입이 증가하여 총에너지수입액은 전년대비 10.5% 증가한 15,814백만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총수입액중 에너지수입액 비중은 '92년도 17.5%에서 금년도에는 18.3%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 에너지 수요전망

	1992(잠정)			1992(잠정)		
	증 가 율	구 성 비	구 성 비	증 가 율	구 성 비	구 성 비
산 업	50,542	18.1	53.8	54,713	8.3	53.8
수 송	18,640	15.4	19.9	21,093	13.2	20.7
가 정 · 상 업	22,389	2.5	23.8	23,459	4.8	23.0
공 공 · 기 타	2,304	1.2	2.5	2,502	8.6	2.5
計	93,875	13.0	100.0	101,766	8.4	100.0

	1991	1992(잠정)	1993(전망)
-에너지수입액(백만달러)	12,292	14,329	15,814
(증가율, %)	(12.5)	(16.8)	(10.4)
-총수입에 대한 에너지 수입비중(%)	15.1	17.5	18.3